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3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송기현 · 김영진 · 김재원
백혜련 · 복기왕 · 손명수
정춘생 · 주철현 · 최혁진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제15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한다.

제62조제3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출·승인”을 “제출·검토·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

전관리원(이하 이 조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8조제7호의2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2조제11항”을 “제62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62조제12항”을 “제62조제13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제3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62조제14항”을 “제62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62조제18항”을 “제62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 중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을 “제62조제4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62조제18항”을 “제62조제1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바. ----- ----- -----제62조제16항----- ----- -----
사. (생략)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② (생략)

<신 설>

③. ④ (생략)

제62조 제16항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이 조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같음)

⑥ -----
-----제5항-----

-----.

⑦ -----
-제출·검토·승인-----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⑩ -----
-----제8항-----
-제9항-----

-----.

⑪ -----
-----제4항-----

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
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⑪ ~ ⑮ (생략)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
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

제6항

----- 단
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⑫ ~ ⑲ (현행 제11항부터 제
18항까지와 같음)

제80조(시정명령) -----

1.2. (현행과 같음)

3. -----제5항-----

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 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니한 경우	----- ----- -----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 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5항----- ----- -----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 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 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 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2항----- ----- ----- -----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 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 치게 한 관계전문가	9. 제62조제13항----- ----- ----- -----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5.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략)

14.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1.2. (현행과 같음)

3. 제62조제8항-----

3의2. 제62조제15항-----

3의3. 제62조제19항-----

4.5. (현행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62조제4항·제6항 및 제9항-----

15. 제62조제19항-----

제출한 자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